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 녹지) 해제 청원 의견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각종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구미시 지산동 594-21번지 외 36필지(27,860㎡) 토지는 1973. 12. 31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미시행으로 토지이용도의 저하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함

다 음

- 구미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장기 미집행 시설인 지산동 도시계획시설(광장)부지 소유자들의 35년간 사유재산권 피해와 고통을 감안,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지역 주민에 대한 공람과 의회의 의견청취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계획시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며,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년 매수 청구 건수와 보상금 집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 해제해 나갈 것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2008. 12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